|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6호  증치세세금계산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업무를 순조롭게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공평한 세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에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7월 1일부터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 증치세보통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 판매자에게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그 기업에 증치세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매자 납세자식별번호”란에 구매자의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기입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세수 증빙으로 간주될 수 없다.  본 공고에서 일컫는 기업은, 회사, 비(非) 회사제 기업법인, 기업 분지기구(지사),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과 기타기업을 포함한다.  2. 판매자가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세금계산서 내용은 실제 판매상황에 따라사실대로 발행하며, 구매자 요구에 근거하여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판매플랫폼시스템을 통해 증치세세금계산서 세수통제시스템 백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관련정보 세금계산서를 도입하는 경우, 시스템에 도입한 세금계산서 데이터 내용은 실제거래와 부합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판매플랫폼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1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发票开具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16号  为进一步加强增值税发票管理，保障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工作顺利实施，保护纳税人合法权益，营造健康公平的税收环境，现将增值税发票开具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7年7月1日起，购买方为企业的，索取增值税普通发票时，应向销售方提供纳税人识别号或统一社会信用代码；销售方为其开具增值税普通发票时，应在“购买方纳税人识别号”栏填写购买方的纳税人识别号或统一社会信用代码。不符合规定的发票，不得作为税收凭证。  本公告所称企业，包括公司、非公司制企业法人、企业分支机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和其他企业。  　　二、销售方开具增值税发票时，发票内容应按照实际销售情况如实开具，不得根据购买方要求填开与实际交易不符的内容。销售方开具发票时，通过销售平台系统与增值税发票税控系统后台对接，导入相关信息开票的，系统导入的开票数据内容应与实际交易相符，如不相符应及时修改完善销售平台系统。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7年5月19日 |